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7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 1. 개정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79호, 시행 2014.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신청(안 제16조의2)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및 별지 서식 신설

###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  
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담금 면제 신청)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 및 영 제 2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6조의2(부담금 면제 신청) 법 제 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창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 및 영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식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회사형태 (개인/법인)	설립연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대표자 전화	
		e-mail 주소	
	창업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사업체 운영이력

기 간	형태 (개인/법인)	상호명	업 종	직 위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 ) 부담금을 면제 받고자 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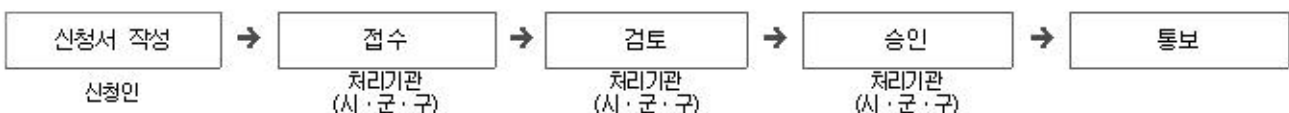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09